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8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2.

발 의 자:김위상·박충권·임이자

김형동 · 김성원 · 최은석

김승수 • 우재준 • 박성민

김선교 · 서범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단·치료·재활 등의 목적으로만 지급이 가능한데, 업무상 재해의 누적·방치로 인한 상병의 악화로 치료·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.

이에 「국민건강보험법」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'예방'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'예방관리와 악화방지'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.

또한, 현행법상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,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,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

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(안 제40조 및 제12 2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정수 등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8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0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예방 및 재활치료

제122조제1항 중 "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"을 "은"으로, "적용할 수 있다"를 "적용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"를 "해외파견자의"로, "보험 가입의"를 "법 적용 제외·재적용의"로, "보험 관계의 소멸, 그"를 "그"로 한다.

- ② 제1항의 보험가입자가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,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1. 제121조에 따른 보험사업에 가입한 경우

- 2. 파견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
- ④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 우 승인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해외파견자에 관한 적용례)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해외로 파견되는 해외파견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요양급여) ① ~ ③ (생	제40조(요양급여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	4
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재활치료	4. 예방 및 재활치료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122조(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)	제122조(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)
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	①
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	
대한민국 밖의 지역(고용노동	
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	
한다)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	
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(이	
하 "해외파견자"라 한다) <u>에 대</u>	<u>&</u>
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	
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	
<u>자를</u>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	
역 안의 사업(2개 이상의 사업	
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	
말한다)에 사용하는 근로자로	
보아 이 법을 <u>적용할 수 있다</u> .	<u>적용한다</u> 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② 제1항의 보험가입자가 근로 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, 공단이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1. 제121조에 따른 보험사업에 가입한 경우
- 2. 파견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에 발생한 재해 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
- ④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승인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.

<u>②</u>·<u>③</u> (생 략)

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산정,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,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, 보험 관계의 소멸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
과 같음)
<u>⑦</u> 해외파견자의
<u>법 적용 제외·재적용의</u>
<u> </u>